

## 【 29 】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2006. 4.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관리지역 내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,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불분명하여, 이 부분에 대하여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관리지역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6조제1항)

##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제16조”를 “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”이라 함은 양주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.

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<p>제1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<u>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	<p>제1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<u>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”이라 함은 양주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<u>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u></p>		

## 【붙임 : 관계법령】

### ○ 주차장법

제19조 (부설주차장의 설치)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·제2종지구간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·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(이하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(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 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 (용도지역의 지정)

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1. 도시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 :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 :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 : 공업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 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2. 관리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보전관리지역 : 자연환경보호, 산림보호, 수질오염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나. 생산관리지역 : 농업·임업·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다. 계획관리지역 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·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
3. 농림지역

4. 자연환경보전지역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.